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39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제220503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대상 및 채용비율 확대(안 제29조의2제1항) ..	3
나.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전공공기관에의 유인체계 신설(안 제29조의3) ...	10
다.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화(안 제29조의5) ...	12

I.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제220503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성윤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0. 30.

다. 회 부 일 : 2024. 10.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경우는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수행했음에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법에서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전지역인재 채용이 채용비율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이전지역 외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를 의무화하

는 등 지역발전 기여를 촉진하고, 기여 실적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전지역인재에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 하며,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채용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 타지역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발전 기여 추진실적에 따라 포상 및 조세감면·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개선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에 대한 기여를 촉진함으로써 이전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

3. 검토의견

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대상 및 채용비율 확대(안 제2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 ----- ----- ----- -----지방대학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대학----- ----- -----말한다. 이하 같다)----- ----- -----졸업(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거나 졸업예정인-----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 ----- ----- -----.

현행	개정안
② ~ ⑥ (생략) <u><신설></u>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채용의무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의무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 채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① 이전공공기관등의 소재지의 지방대학원을 졸업(수료 포함)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지역인재 대상에 포함하고, ② 시행령에 규정된 채용의무 비율¹⁾을 100분의 50으로 상향함과 아울러 이를 법률에 명시하며, ③ 채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이전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인재까지 채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2.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해당연도	비율(%)	도입연차	비율(%)
가. 2018년도	18.0	가. 1년차	18.0
나. 2019년도	21.0	나. 2년차	21.0
다. 2020년도	24.0	다. 3년차	24.0
라. 2021년도	27.0	라. 4년차	27.0
마. 2022년도 이후	30.0	마. 5년차 이후	30.0

(1) 지역인재 대상에 지방대학원 졸업(수료포함)자 포함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²⁾·공공기관 채용 등에 도입되어 있음.

지방대학원을 졸업(수료 포함)한 자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원은 지역인재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원까지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대학원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생을 포함하는 것은 지자체 간 합의되지 않은 광역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대학 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청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 및 법률에 명시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관련해 현행법 시행령에서 이전공공기관등은 이전지역의 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인재 채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용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 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 신설 당시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법률에서 의무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유사제도사례³⁾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 갈등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특히, 교육부 소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⁴⁾.

3) (공무원임용령) 서울 제외 지역인재 채용비율 20%(7급 30%), 양성평등 채용비율 30%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

지역인재의 기준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두 법률은 지방대학 출신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이며, 이전공공기관등의 경우 현행법과 지방대육성법을 모두 준수하여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현행법은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채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 상 채용비율이 확대될 경우 非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학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혁신도시법과 지방대육성법 상 지역인재 채용제도 차이】

구분	혁신도시법	지방대육성법
채용비율	<u>100분의 30</u>	<u>100분의 35</u>
채용대상	<u>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u> 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u>지방대학</u> 의 학생 또는 졸업한 사람
채용기관	<u>이전공공기관등</u>	<u>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u>
기타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u>

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역인재 채용비율 미달 시 비수도권 U턴인재 채용

지역인재의 범위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이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한 제외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채용의무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지역인재 대상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학업 이후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어 일하는, 이른바 ‘U턴 인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전공공기관등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대함과 아울러, 우수한 인재를 지역으로 재유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입장, 지역인재 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지역인재 대상 및 채용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지역인재 대상 및 채용비율 확대 관련 관계기관 의견 】

구분	주요 의견
법무부 (반대)	○ 채용비율 변경 필요 시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고, 이전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출신 대학·대학원생에 대한 취업기회 제한 우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반대)	○ 법률에 의무채용비율 50%를 명시하게 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별 기관 특수성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됨
한국전력기술 (반대)	○ 대학원 졸업자 포함 찬성 ○ 법률에 의무채용비율 50%를 명시하게 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별 기관 특수성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됨
기술보증기금 (반대)	○ 부산 지점은 8.97%에 불과, 이전지역(부산)인재를 50% 이상 계속 채용 시 전국 단위 인사배치와 인력운영이 어렵고, 여타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이전지역(부산)인재 채용비율은 100분의 35가 합리적
한국수력원자력 (반대)	○ 이전지역인재 목표 운용 중 특정대학 출신 쏠림현상 문제 등이 발생한 바 상향하더라도 35%가 적정하며, 부작용이 심화될 것인 바,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도 고려 ○ 지역인재 대상 확대 시, 비수도권 U턴인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U턴인재까지 확대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타당

나.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전공공기관에의 유인체계 신설(안 제2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u> <u>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개정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포상 및 조세 감면·보조금 지급 등의 유인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임.

현행법⁵⁾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매년 이전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제2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매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유인체계에 대한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전공공기관의 예산을 지역발전 기여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유인이 없는 상황임.

개정안과 같이 포상·조세 감면·보조금 지급 등의 유인체계를 신설하는 것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과 이전공공기관이 상생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표회⁶⁾를 통해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이전공공기관에 2024년부터 포상을 시행 중이며, 조세 감면 등은 「조세특례제한법」⁷⁾등 조세 관련 법률 등을 통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률의 개정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23지역발전계획 우수사례 표창 시상 및 설명회 개최(24.7.11~7.18 , 창관표창 5점)

7)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다.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 서비스 우선 구매 의무화(개정안 제29조의5)

현행	개정안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u>해당</u>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u>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u>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 ----- ----- ~~우선 구매를-----~~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공산품, 농수산물 등)나 서비스(용역, 시설유지·보수 및 운영, 위탁사업 등)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임.

이전지역의 재화·서비스의 우선구매 비율을 규정할 경우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재화·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 이전공공

기관과 이전지역의 상생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편, 이전지역의 산업 특성 등에 따라 구매 등이 제한될 수 있어 우선구매 비율 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이전지역별 생산 재화·서비스, 이전기관별 특성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할 때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재 이전지역별로 이전공공기관의 구매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우선구매 촉진을 견인하는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⁸⁾하여 시행 중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9

8) 「지역물품 우선구매 운용기준(‘20.9.19.)」을 마련하여 이전지역별 우선구매 협의회(시·도 주관)에서 이전기관별 목표비율 자율적으로 설정·권고. 단, 우선구매 목표비율은 과거 구매실적을 분석하여 최근(3년 이내) 평균 우선구매 비율 이상 설정을 권장